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2月 11日(月) 10時12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宣相善議員 外 5人 發議)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4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8面

(10時12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제한된 짧은 일정 속에서도 19만 중로구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알차고 성실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솔선수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새로 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회의 중반까지 와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변함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택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의 현안사항과 아주 밀접한 안건들

인 만큼 위원님들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직책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宣相善議員 외 5인의 건의요구(안)을 먼저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한 후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관한條例改正 建議要求(案)(宣相善議員 外 5人 發議)

(10時15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간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宣相善議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宣相善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건강에 유의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간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본 건의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88년 5월 이후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해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의 미반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운영상 전반적인 개선 보완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자치구간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별표2에서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기준

을 현행 19개 항 외에 지방세법 제183조, 제234조의11에서 재산세, 종토세의 국가 등 비과세 및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에서 재산세, 종토세의 종교 등 시설에 대한 비과세 대상건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 중앙청사, 헌법재판소 및 감사원, 기무사, 문화관광부, 기상청, 지방경찰청, 세종문화회관 등 특수한 국가시설 및 정부 공공기관 201개소 등이 있고, 또한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 69개소, 보물 27개소, 사적 16개소, 천연기념물 7개소 등 총 284점이 있으며,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으나 반면 호적인구는 140만명이며 주간 유동인구는 200 내지 300만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추가 부담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중심지역이면서 인접해있는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우리 구와 같은 입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측정치 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지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 조례로서의 기능 유지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개정건의요구(안)으로 우리 종로구에 대한 행정 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단위의 차등 적용이 되는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관한條例改正

建議要求(案)

(宣相善議員 외 5人)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 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질의는 제안한 의원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상대로 합니까?

○委員長 李東奎 질의에 대한 답변은 宣相善議員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받으시면 되겠구요.

○千相旭議員 千相旭委員입니다. 宣相善議員께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해서 중요한 안건을 제안하셨는데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宣相善議員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건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느냐는 애 갑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한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함을 드립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정부 종합청사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 내용과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조

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하시든 집행부에서 하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정성 여부에 대해서

○宣相善議員 千相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千相旭委員 예, 좋습니다.

○宣相善議員 각 자치구의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현재 19개 향인데요 19개 향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문화재나 또 특수 공공기관 등 이게 산재되어 있는데 소위 비과세지역이 66.7%에 달하는데 측정단위 수를 19개에서 20개 향으로 해달라는, 1개 향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종로구의 조정교부금이 250억에서 약 300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9개 향에서 측정단위를 하나를 늘리면 5%씩 잡고 300억의 조정교부금을 가져온다면 5% 잡으면 약 15억이 됩니다. 따라서 1개 향을 늘려주면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정에 상당히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러한 것들이 우리 종로구의 조례 개정으로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냐는 그 법률적인 검토를 했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宣相善議員 이것은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꼭 가져와야 된다,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1개 향을 측정단위 수 속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이 고궁이나 공공시설, 특수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시키니까 우리 종로구는 여건상 비과세가 66.7%가 되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적한 바가 바로 2001년도의 세입예산 중에서 각종 교부금이나 지원금이 약 56억 57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더라구요. 그런 재정 상황 하에서 우리가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교

부금 자립도가 그만큼 향상이 되어서 그것이 감액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자립도는 71%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56억 57억 정도가 지원금 내지 교부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데 이러한 것을 저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의 실현성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宣相善議員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겁니다.

○千相旭委員 예, 찬만다행입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千相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宣相善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25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과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로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한 입장수익의 100분의 20과 대관료 중 많은 쪽을 사용료로 받기 위해 마련한 입장권 사전검인 제도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사전검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관 사용 후 입장수입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과 위원님께서서는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을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도 11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해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토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세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총 수입액의 확인을 위하여 입장권에 대한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규제이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동 경계조정 의견이 제기되었던 9개 대상 지역에 대하여 경계변경 실태와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지역정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생활불편 등의 사유로 동 경계 변경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세종로를 중심으로 도로 건너편 동측에 위치한 세종로 100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일민재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문화관광부에서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편의를 고려해 동 경계 변경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동인 사직동 및 종로1.2.3.4가동의 구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사유로 경계 변경을 찬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고 모두 업무용 건물이며, 동일 지역 내에서 교보문고는 종로1.2.3.4가동이, 그 외 건물은 사직동이 관할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으로서 건물주 등 관련 주민의 편의와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李東奎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서는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직동 관할구역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가 세종로거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므로 행정동 관할을 사직동에서 종로1.2.3.4가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사직동 관할의 법정동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를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이번에 편입하게 될 면적은 총 47필지 3만 5,987.4㎡로 약 0.035㎢가 되겠습니다. 이 중 대지는 22필지 3만 2,377㎡이고 도로는 25필지 3,6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황입니다. 관공서, 공공기관이 소재하며 거주 주민은 없습니다. 즉 일민재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문화관광부, 미대사관, 열린마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여건입니다. 대상지역은 행정동이 사직동에 속하면서 세종로 대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관계 구의원님들 세 분이 다 찬성하셨고 대상지역 건물주인 일민재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문화관광부에서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입니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조정 후에 편입되는 지역인 사직동은 현재 1.22㎢에서 0.035㎢가 감소된 1.18㎢가 되었고, 편입받는 지역인 종로1.2.3.4가동은 현재 2.36㎢에서 0.035㎢가 증가된 2.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하여 제5항에서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

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 즉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로를 중심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07회 종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규정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와 동법 제5조(규제의 원칙)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지급정지 조항의 일부에 대해 규제개혁모델 적용사무이므로 정비하라는 공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조문에 대하여 규제사무로 확정함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李東奎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서는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중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지급정지사유가 5개항이 있습니다. 이 중 1,2,5호를 삭제하고 3,4호는 존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삭제하는 규정을 보면 1호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호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5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 3개항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존치내용을 보면 3호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4항에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존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에 있는 장학금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이고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의 10% 범위 내로 되어 있고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납

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지급자녀수가 41명에 지급액이 938만 4,000원이고 1999년에는 36명에 821만 6,000원, 2000년에는 38명에 86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급정지 사유 중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2000년 2월 8일 제정됨에 따라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조의 목적에서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 통·반설치조례의 통·반장의 위·해촉 조항 일부에 대해 남녀차별적 규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개선하라는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서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 중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조항에 남녀차별적 내용을 정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헌법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남녀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통장의 위촉대상 중 하나인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선출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에 통장의 위촉대상에 대해서 3개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호, 2호를 1호로 만들고 3호는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또는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 중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이 345명인데 3명 결원이고 342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 중 성별을 보면 남자가 302명 여자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도 여성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는 있으나 통장의 임무 수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둔 것은 남녀평등과 관련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근거로 '99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중 제21조의 문서시행문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과, 제36조3항의 전자이미지관인 사용방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공인조례 제2조(공인의 종류) 제3항에 전자이미지관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온라인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구 공인조례를 효율적으로 일부 보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행정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함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관인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절차를 보고드리면 먼저 최종결재권자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상으로 처리담당자에게 이송이 되면 담당자는 전자결재 문서를 저장한 다음에 문서심사자에게 심사를 받아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날인받은 후 전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11. 전자이미지 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에 관하여 제1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한다」로 되어 있고 제36조(특수관인)에 관하여 제3항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관인은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이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자결재문서 발송시 전자이미지 관인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및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1회나 2회나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회도 연임할 수 있고 15회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40년을 하는 통장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단 1회로 연임할 수 있다 해도 4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洪起瑞委員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이러한 주민 자주 및 지역방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지 않고 주민 화합과 이러한 규정이나 확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각을 짓지 않고 부드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님의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같이 연구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오늘 조례가 개정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어느 단체도 예를 들면 새마을회장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벌써 개정된 지 오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 흐름에 맞춰서 개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해주면 각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위촉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임규정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구민 자조의 지역방위 또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폭을 넓게 두고 구청의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洪起瑞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5조에도 보면 제1,2항만 통합을 하자고 했거든요.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지금 현재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제3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는 자가 70세도 하고 80세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조 3항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관은 조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5조의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임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연후에 개정하도록 해서 어떤 법이든지 예외 단서 조항은 꼭 둡니다. 그러한 미묘한 사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앞으로 이러한 통반장 위·해촉이라든지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행정위원회에 보고한 연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남녀 구분 없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우수한 통장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옛그제 우리가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전부 통장들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넘는 노인들이 과연 그 고지서를 전부 발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 통장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통장들과 적대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일선에서 동장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고지서를 돌리는데 70세 된 노인들이 가서 고지서 30명, 200명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장정리를 못하는 것은 이런 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규제를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풀어줄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통반장 일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통반장 운영이나 이런 사항은 법이나 조례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운용의 묘가 다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인 자는 고지서 송달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강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세 이상인데 데도 일을 충분히 하는 분도 있는데 단,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통장의 임기나 위·해촉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보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집행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통반장 구조조정을 하라고 수차례 걸쳐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단 예를 들면 통장위촉 규정이 없어요. 인구 1,000명당 하나라든지 500가구당 하나라든지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통장수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 동 같은 데는 인구가 4,000명도 안되는 데도 통장이 30명 되는 데가 있고 26명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인구가 1만명인데 12개통 밖에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 주민한테 원성을 받아 가면서도 의회에서 정리를 하라고 과감하게 채택질을 해줬으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른 어떤 욕을 안 먹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장도 지

금 현재 345명에서 344명인데 통장 수 줄어든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계속 통장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
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통·반조정 현황을 말
씀드리면 통장 6분, 반장 149분 해서 현재 155분
이 교체 조정되었고 또 이러한 통반장의 임명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통장위축에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부유층과 상가지역에서는 통장 희망자가 사
실 없고 어떤 곳은 경쟁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에게 허
심탄회하게 저희 실정을 보고드리어서 위원님들 의
견에 따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
은 주민들이 경쟁해서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소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라든지 상가지역에서는 통
장 하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
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민행정위원님들
께 일단 보고한 연후에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洪起瑞委員** 국장님! 자꾸 피해 가지지 말고
상가지역에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과
감하게 통장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재 종로 1,2,3,4가를 봅시다. 종로 1,2,3,4가동 현
재 통장이 몇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38분입니다.

○**洪起瑞委員** 인구가 몇 명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인구가 7,681명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7,681명에 38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명륜3가동은 인구가 9,800명인데 12명
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적정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통장을 하지 않겠다는 동이 있는
데서 38명씩이나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
겠습니다. 현재 종로 1,2,3,4가동은 위원님도 아시
는 바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
동이 통합되어 있는데 명륜3가동은 주로 주택지

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에
대해서도 구에서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의 이러한
일을 각을 지어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집행부의 현재 애로라든지 업무를
처리한 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뜻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통반장
연령제한이라든지 세대단위로 통반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께 보고한 연후
에 결정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지나갑
니다. 오늘 어차피 조례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놔야지 그
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처럼 또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주택가다 상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
는데 그러면 5,6가동은 몇 명입니까? 통장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5,6가동이 22분입니다.

○**洪起瑞委員** 그것 보세요. 5,6가동도 인구를 비
교해 보자 이거예요. 명륜 3가동하고 인구를 비
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로 1,2,3,4가동은 2개 동이 통합
한 동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
고 있는데 진짜 통장을 기피하는 지역과 통장을
경합하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구청이 구에 있는 조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무 자르
듯이 하는 것보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달라 이것입
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해서 시민행정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린 연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은 이따가 수정(안)을 내겠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급
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통장자녀 장학
생 선발을 하는데 아까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이

라고 했는데 유공장학생은 어떤 범위 내에서 선발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통장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기준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무조건 각 동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 받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洪起瑞委員**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반상회 하는 데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를 지적해보십시오. 본 위원하고 나가봅시다. 반상회가 전무입니다.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보면 25일날 되면 반상회보라도 각 집마다 제대로 돌려주는 것은 그것만 잘되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수 동이에요. 지금 현재 반상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동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돼요. 정 안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해서라도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가 운영이 안된다면 통상회라도 해서 진짜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야지 여기 앉아서, 물론 우리 국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동을 가봐도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동이 없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하고 行政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중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 100번지가 1.2.3.4가동으로 편입되는데 만약에 지금 세종로 1번지하고 세종문화회관 옆에도 법정동이 그대로 있죠? 아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옆에 세종로로 되어 있는 법정동이 몇 개 있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지금 잔존하고 있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鄭泰淳委員** 만약에 세종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어디냐고 시민이 만약에 묻는다면 전문가가 아니고는 '몇 번지는 이쪽, 몇 번지는 저쪽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고는 안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이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번지로 나눠서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이라고 해줄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만약에 그동을 법정동을 관장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주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고자료에 보시면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鄭泰淳委員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 세종로가 중앙청 청사는 청운동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요. 기존에 이렇게 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일민재단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사가 다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종로1.2.3.4가동이고 옛날 구건물은 세종로동이고, 또 교보문고 자리도 일부분은 1.2.3.4가동이고 또 일부분은 세종로동이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세종로 도로 녹지대를 경계로 해가지고 행정목적상 편리하게끔 동측은 1.2.3.4가동에서, 서측은 사직동에서, 북측은 청운동에서 확실하게 나눠서 업무를 관장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로라고 하는 법정동이 하나인데 1번지는 청운동에서 관장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 옆에는 또 결론적으로 사직동에서 그대로 잔재해서 관리하고 있고

○鄭泰淳委員 이번에 100번지 쪽에 있는 것은 1.2.3.4가동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세종로라고 하면 어느 동사무소가 관장하느냐 하고 주민들이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고는 몇 번지는 어디, 몇 번지는 어디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텐데 불편하더라도 한군데 있을 경우는 그 동사무소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물론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거리 상으로 뺀 점이 있어도 집약된 데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동 경계는 주로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신1,2,3동과 송인1,2동 또 종로1.2.3.4가 중에서도 와룡동 일부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쪽이 명륜3가에 가까워서 거기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원남동 일부, 신영동 일부도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鄭泰淳委員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서울 시민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세종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어느 쪽을 안내해줘야 돼요? 북측은 저쪽으로 가고 서측은 서쪽으로 가고 동측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해박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직원도 하기 힘들텐데

○總務課長 李東明 그래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동을 가르는 겁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전문가가 되어 집을 잘 찾고 주소를 잘 찾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로를 경계로 갈라지는 것이고 집을 찾는 문제는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법정동 번지를 찾아서 하면 찾을 수 있죠. 굳이 행정동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泰淳委員 우리가 굳이 법정동으로 집을 찾는 것보다 어떤 파출소나 동사무소를 가지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가서 김 서방 찾듯이

○總務課長 李東明 그래서 주소 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정동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로 1번지 이렇게 표기하지 세종로 1번지가 청운동 관할이라고 해서 청운동으로 표시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동 표시를 하는 겁니다.

○鄭泰淳委員 저희가 일상적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이러는데 물론 조정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에 가보면 어디는 그 동한 가구는 다른 동에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좀더 편리하게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깊은 연구를 하셔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혹시 금방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못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전이나 홍보를 해서 제도적으로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鄭泰淳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동 경계를 긋는 것이 큰 도로로 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안되는 거죠?

○**總務課長 李東明** 이번에 9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8군데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과감하게 행정동 경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명륜3가동은 동사무소 바로 앞집이 해화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만 쳐도 동사무소 행정민원을 보러 올텐데 그 불합리한 것 때문에 해화동 로터리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수 의견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런 행정동의 경계를 안 잘라준다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퇴폐적인 자치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약간의 주민들의 물의가 있고 약간의 의견수렴이 있다 하더라도 큰 도로를 경계로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서 경계를 다시 측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제가 답변을 올릴 때 도로를 경계로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또 행정동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한 군데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글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명륜3가동을 자꾸 거론해서 안되었지만 동사무소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인접되어 있는데 그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總務課長 李東明**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보충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洪起瑞委員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내용은 좋습니다. 남녀차별을 덜 주기 위해서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종로구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洪起瑞委員님께서도 질의하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까지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보면 삭제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통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 문제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 위원회에 상정된 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시 수정 보완한 후 차기 임시회로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보완한 후 상정해달라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千相旭委員 우리 宣相善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宣相善委員께서는 어떤 지역의 동 경계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지역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委員長 李東奎 동 경계가 아니고 통·반설치조례입니다.

○千相旭委員 통·반설치조례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宣相善委員 보완뿐만 아니라 삭제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조례를 보면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그러면 60세 이하로 해야 되는데 현재 종로구의 통장을 보면 70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종로구의 통장들을 보면 노령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1회나 2회나 이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몇 십년을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동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은 부결동의안이 아니겠습니까?

○宣相善委員 예, 현재로는 부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부분만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宣相善委員님이 좋은 말

씀을 하셨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규제개혁에 의해서 위에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委員長 李東奎 무슨 말이나면 한 가지 그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는

○宣相善委員 통·반설치조례를 이 한 부분만 개정하자고 올리는데 또 개정을 하려면 다음에 다시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번으로 해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현재 이 규제개혁이 저희들이 4건을 설명드린 것은 행자부나 서울시에 의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을 한 연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규제개혁 조항으로 고쳐 가지고 해도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 그러려면 또 이 부분만 내용을 삭제하는 거니까 통과가 되면 다음에 통·반설치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반적인 것을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연후에 저희 집행부의 뜻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고 이번에는 행정 편의주의 이런 사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고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고쳐놓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못고치면, 이것은 금년말 중으로 고치라고

○宣相善委員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고 또 내년도에 전체적인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이번에 우리가 세가지는 삭제할 수 있잖아요? 개정이라고 올

라온 부분이니까 이 세 가지는 의회에서 삭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千相旭委員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부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청을 하고 싶어도 질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질문 순서가 아닙니까? 동의안 제출이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희들이 보고를 한 연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서 이 부분을 宣相善委員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 때에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委員長 李東奎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질의 끝났습니까?

○宣相善委員 예,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관계로 저희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34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꾸 애매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9조제2항에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의 총액을 통

보하여야 한다」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종로 깨끗한 지방자치를 부르짖으면서 사전검인을 받았을 때는 이런 500명이고 1,000명이고 사전검인을 받을 때는 수수료 얼마를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후니까 1,000명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끝나고 나서 500명만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시설관리공단 우리 공무원 직원들하고 사용자들하고 부조리가 생길 염려가 있지 않아요? 의심받을 짓을 누가 조레까지 개정하는지를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부조리 발생 요인이 생기는 걸 만드느냐는 거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玄壽漢委員님 말씀이 있었습니까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마는 현재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행정 편의위주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풀어서 사후에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신청인이나 신청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믿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소 차질이 있을지는, 그때 가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마는 금년에 우리구의 사례도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검인 사례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입장권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자로 구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 그 자체를 검인 받는 것은 별 의미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규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검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玄壽漢委員 검인해야 숫자가 나오고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니야

○總務課長 李東明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심의관계이고 저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거기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강

당의 경우에는 대강당의 경우는 500석, 체육관의 경우도 사람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玄壽漢委員 그거야 눈으로 대충 세면 되겠지만 결탁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현재 서로 어느 정도는 서로 믿고 412석의 공석을 보면 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관이나 공공기관은 사용자의 편익증진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하고 효율성도 증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제위원회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玄壽漢委員 좋습니다. 규제개혁 같은 것은 좋은데 행정관리국 소관인지 박정희 정권시절에 무상살 대여가 있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玄壽漢委員 지금 몇 십년 지났어요? 그런 것까지도 아직까지 동직원한테 돈 받아들여라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나갔을 때는 부암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다 이사 나갔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추적하고 다녀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받아들이냐, 한 동네에 한두 건 받아들이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없애야지 이것을 농림부장관은 내 소관 아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되거든,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사소한 이런 것을 고치라고 그래요?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우리 종로구 관내만 해도 전국적으로 해도 몇 %로 안돼요. 그런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행자부의 일이지 이런 것은 혹시나 만분의 일이라도 민원이 발생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쳐라 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행정관리국 직원들께서는 나가주시고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관계공무원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4時17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간의 식품진흥기금의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6년 5월 10일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87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 운영되어 오다가 '88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기금으로 분리, 운용되어 왔습니다. '94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이 폐지되어 시·도에서만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제65조제4항이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구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며 2000년 7월 27일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60%로 배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칙」,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시

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 총 4장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안) 제4조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고,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생활복지국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관한 용자 관련하여 용자계획공고·용자대상·용자신청 및 대상선정·용자한도 및 조건, 용자금 대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 중저가 모범음식점을 집중 육성하고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용자 지원하여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정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29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도에만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식품위생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 전문가, 식품위생업 직능단체 대표자,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동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의 재원인 식품위생법 관련 과징금 징수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245건에 5억 4,423만원을 부과하여 238건에 5억 1,8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01건에 6억 6,714만원을 부과하여 185건에 6억 1,0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56건에 1억 5,944만원을 부과하여 52건에 1억 5,1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000년도의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99년 12월 29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징금 처분대상이 대폭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의 귀속비율입니다. 시행령 제39조의2가 2000년 7월 27일에 신설되어 시·도에는 100분의 40 시·군·구에는 100분의 60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구에도 설치, 운용함으로써 구의 실정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60%만 구의 기금으로 귀속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기금의 운용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입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2조2항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이것은 혹시 구청장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 소지가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環境衛生課長 답변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주가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하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업중앙회 종로지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해서 다시 심의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심의위원회 또한 거기다 의뢰했다고 자기들끼리 슬쩍하는 경우는 안나와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위원으로 심의할 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규칙은 정해야 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할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나중에 규칙 정할 때 구청장이나 위생과장님이 자기 맘대로 슬쩍 해서 편리하게 하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모든 규칙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법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상식에서 벗어난 그

런 규칙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한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玄壽漢委員 본 위원의 희망사항이지만 모든 조례개정이나 뭐를 하면 규칙은 나중에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모른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의원들도 내용을 대충은 알아야 조례개정을 심도있게 할 수 있잖아요.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난 뒤에 꼭 규칙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거기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여기에 경제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경제과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이 설치되게 되면 그 기금운영권이 제가 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하고 관계된 일은 아닌데 나하고 관계된 일어서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역경제과도 생활복지국 소관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玄壽漢委員 식품가공법에 의해서 가공된 식품을 운반, 판매하는데 그에 따른 것으로 매년 한번씩 식품유가공협회에서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돈 내고 해야 됩니다. 2시간을, 그런데 우유나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 것은 생산된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시키는 과정인데 쓸데없는 교육을 매년 한번씩 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30만원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드는 사람한테만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경제과에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정부에 다 건의를 해도 안된다 이거야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교육을 시키는데 대전 이남, 대전 이북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면 대전 이북은 전부 와야 되고 강남까지 다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돈, 그러면 여기 식품기금에 나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혹시나 유가공법에 보면 제24조제6항에 그런 조항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이, 그래서 내가 심의하기에 앞서 집에서 들여다보면서 이런 것도 혹시 그런 예에 속하지 않나, 불필요한 것은 계속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그것을 시나 행정자치부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자꾸 그냥 해버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음식점에서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난다고요.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상부에 불필요한 것은 개선해달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玄壽漢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규칙(안)을 잡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순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초안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야만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어디다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규칙을 같이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

○委員長 李東奎 아니죠.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잖아요? 사전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안)으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우리 조례제정 절차나 법개정 절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먼저 제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하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물론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그 즉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제정 자체가 안됐는데 하위법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알겠습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 2호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단체가 되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구에는 요식업조합 중앙회 종로지회, 요식업으로 지금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단체 그런 데서 출연금을 내놓을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이 조문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요식업 중앙회, 지회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구성한 단체가 요식업조합중앙회 종로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안) 제2조(정의) 4호에 보면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

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을 위생단체나 이런 데서 출연금으로 내놨을 때는 상당히 입김이 작용되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모범음식점을 정하는데 임의대로 이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이 기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 이런 용도에 쓰는 겁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이 자금을 주기 위해서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이런 용도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고

○宣相善委員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위생단체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어느 업소를 정해놓고 기금도 지원하고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묻는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지금 저희가 2000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합쳐 가지고 저희 관내에 6,07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92개소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모범업소' 하면 진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만 지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부탁을 누가 그 사람이 와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자격여건이나 시설관계가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용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그렇게 아무 업소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6,900개 중에서 약 300개 5% 미만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진짜 외국인들한테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업소만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 업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데 심의를 해서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업소들이 음식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제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영업주께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구청장한테 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한 업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적합한 업소라고 판단이 될 경우 음식점문화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음식위생업소 단체장도 포함되겠고 또 음식관련 교수라든지 또 관계공무원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되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재심사를 해서 위생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새로이 음식점을 지정할 곳이 있으면 다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기이 지정해준 모범업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바꾼다고 했는데 계속 모범업소로 남는 그런 음식점도 있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런 음식점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7천여 개 음식점에서 그러면 신청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간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신청 수가 364개소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게, 그 중에서 탈락이 72건이 되고 292건이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재인가된 곳이 236건, 그리고 작년도에는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로 된 곳이 56건 그래서 현재 29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대다수 전년도에 지정되었던 모범업소가 다시 되는구만요. 그러면 그 외에 많은 7천여 업소에서 360여 개 업소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그 외에 더 모범업소로 지정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데도 제외가 되었거나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도 철저히 심의를 해서 정말로 모범업소가 되어야 할 곳이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심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까지는 서울에서 운영을 하는 기금을 우리가 갖다쪼조?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연간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용자현황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87건에 27억을 용자받았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용자를 받습니까? 무상지원이 아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용자입니다. 무상지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지원이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자금이라든지 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이용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 때 우리가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의

60%만 구 기금으로 귀속되고 과징금 나머지는 서울시로 40%를 넘깁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법으로 시행령이 39조에 그렇게 귀속비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다 40%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법에 귀속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의 배분비율이 40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40% 징수해간 만큼 자치구에다 할애를 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기금이 필요없지 않아요? 각 자치구로 쪼개주고 나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저희가 용자해온 것도 있고 타구에도 용자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7월 13일 이후에 부과 징수된 것만 저희가 60%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에서 조성된 기금에서는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아마 각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일정금액을,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일정금액을 아마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도록 900억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한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이나 앞으로 40%가 시로 귀속되는 금액은 시 차원에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수준 향상이라든지 시설개선이나 그런 용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시 차원에서도 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이게 제71조 식품진흥기금법에 보면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를 2001년 1월 12일자로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환경위생과장이 조례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65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가 7월 27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저희 구에 준칙안으로 통보했고, 저희가 10월 13일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기금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또 11월 28일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 기금설치조례 또는 운영조례를 개정할 때는 용자조건이 다 나옵니다. 몇 년 거치 어떻게 상환한다, 금리는 년 얼마로 한다, 규정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네요? 그 내용이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조례(안)에는 그 규정이 없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규칙을 다시 또 제정하려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서울시 규칙안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의하면 용자 및 상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식품제조원이나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8억원 이내로 되어 있고, 시설제조업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렇게 커다란 제조업소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별도로 1,000만원 이하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상환조건하고 자금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금리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 6% 이하로 하고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이 앞으로 국제행사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나 우리 종로에서 특히 우리 인사동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쪽에 집중해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 1,100억을 가지고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운영하도록 2001년부터 운영계획에 계획된 바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인사동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인사동 화장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론했는데 요 그때 외국인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을 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사동에 그렇게 보도를 깔고 도로를 깨끗이 해놔도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되고 하려면 종로의 이런 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주방을 현대화하고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2000년도에 현재 기금은 한푼도 없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예상되는 기금은 금액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 이후 부과 징수되는 그런

○**千相旭委員** 얼마나 예상합니까? 2000년도에 기금이 얼마나 조성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7월 13일부터 8월,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 모두 23건에 7,996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60으로 배분하면 종로구에서 약 4,800만원, 서울시에서 3,200만원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하고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각 구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높은 구인데요 번두리 구에도 원활한 기금 운영을 위해서 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서울시 교부금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千相旭委員 그런데 2000년도에 기금이 4,800만 원밖에 조성이 안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현재로는 확실한 금액입니다.

○千相旭委員 2001년도에도 무슨 과징금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 한 6억까지 징수하던 것이 4분의 1 수준 이상으로 징수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60%라는 겁니다. 60%라면 연간 비축되는 기금이 1억 정도밖에 안될텐데 이걸로 무슨 종로의, 종로는 업소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용자금이 명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역할을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비책이라든가 또는 구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받는 이러한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기금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받을 수는

○千相旭委員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구요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기금의 조성」에서 징수한 과징금하고 또 위생단체 출연금 기타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1억도 안되는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1억이 안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구에다 우리 종로구에다 얼마나 배분을 더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용자를 했습니다마는 있는 기금보다도 상회한 것은 용자를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각 구 부서 담당과장들하고 사전에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경우에,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로는 특별지구다, 종로와 중구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인구로는 20만명이지만 유동인구가 이삼백만명이 되니까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개선을 해야 하고 업소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되고 그것이 불가할 때는 우리 종로구 쪽만이라도 조례에다 이렇게 구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열어놔야지 묶어놓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을, 종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모든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가 맞는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타구 과장들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시에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기금 문제라든지 예산배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저희 종로구가 제일 첫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지역 같은 데는 강북에서 돈을 다 걷어다가 도로 반듯반듯 다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시설 같은 데에다 투자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로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계획사업들을 해야 하고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더군다나 종로에 와서 낮에 다 어지르고 먹고 쓰고 쉽게 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다보니까 종로지역은 낙후되고 그만큼 청소인력도 필요로 하고 심지어 데모하고 다 어질러놓으면 그 다음에 청소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기금이나 예산을 할 때마다 시에다 왜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상황을 감안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900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일정액을 아마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부터도 저희는 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 사정을 감안해서 좀더 그동안에 저희가 거둬들인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숫자가 많고 오래된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千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구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서라도 말입니다. 기금 확보를 최대한으로 몇 십억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千相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청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

니다.

(15時04分 散會)

○出席委員數 9人

李東奎 崔康洵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總務課長 李東明
環境衛生課長 李漢龍